

# 2015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 (FCI REGULATIONS FOR SHOW JUDGES)



1. 일반
2. 도그쇼 심사위원 신청, 교육, 시험, 임명 최소 자격 요건
3. 도그쇼 심사위원 정의
4. 추가 견종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5. 그룹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6.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7. FCI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8.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는 일반 조건
9. 도그쇼 심사위원의 일반 의무
10. 여행, 보험 협정
11. 처신
12. 처벌
13. 시행

부록 : 도그쇼 심사위원 여행 경비에 관한 추가 규정

## 1. 일반

아래 1조부터 8조에 명시된 내용은 자신의 법적 소재지인 FCI 회원국으로부터 개인이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모든 FCI 회원국과 약정 파트너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FCI의 최소 요구 사항으로 여겨진다. FCI가 정한 기본 의무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을 첨가하고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각 FCI 회원국 소관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의 규정이 FCI의 규정과 위배되서는 안 된다.

## 2. 도그쇼 심사위원 신청, 교육, 시험, 임명 최소 자격 요건

신청인의 법적 소재지인 FCI 회원국 규정에 따라 도그쇼 심사위원 후보자의 신청이 접수된다.

각 FCI 회원국은 후보자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과정과 만족할 만한 기본 심사위원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시험을 준비해야 하며, 도그쇼 심사위원 공식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이 규정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최초 견종을 신청한 후보자는 FCI 국제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승인받기 위해 다음의 요구 사항을 필히 충족해야 한다.

- a. 최소 법정 연령 이어야 한다.
- b. 한 견종 이상 신청 시, 그 신청인은 등록된 견사호를 가진 브리더로 활동하며 회원국의 공식 스태드 북에 자건을 등록시켰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도그쇼 출진자로 성공적인 결과를 취득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애견과 관련된 일에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 c. 도그쇼 절차 및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5번 이상 링 스투어드나 링 비서로 공식적인 도그쇼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d. 후보자는 해당 FCI 회원국이 지정한 “공식 시험 위원회”가 주관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다음 과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예비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 1) 개의 움직임, 해부학, 형태학
  - 2) 유전학, 건강, 성격
  - 3) 견종 스탠다드 지식
  - 4) 심사위원의 처신, 원칙, 심사 기법
  - 5) 국내 도그쇼 규정과 다른 추가 규정
  - 6) FCI 도그쇼 규정, FCI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다른 추가 규정

후보자가 위의 기본 지식 사항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 다음의 세부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첫 번째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개를 보는지 배운다. 이 과정은 해당 FCI 회원국의 특별 양성 프로그램에 종사했던 아주 경험 많은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 e. 후보자는 실기 과정에서 견종, 규정, 링 절차에 관한 완벽한 이해 및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교육받고 있는 많은 도그쇼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실기가 이루어진 것이며, 먼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실기의 양과 기간은 각 FCI 회원국이 정한다.
- f. 심사위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각 견종 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견종별 교육”은 각 회원국에서 흔한 견종, 도그쇼에 상당한 두수가 출진하는 견종, 심사위원과 후보자에게 교육하고 싶은 특정 견종에 관한 교육이다.
- g. 실기 교육은 경험이 풍부한 FCI 공인 도그쇼 심사위원의 감독 하에 치러져야 한다. 후보자

는 본인이 교육 중 심사한 개들에 관한 보고서 작성 후, 이를 후보자의 지식, 성과, 처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실기 교육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후, 후보자는 공식 시험 위원회의 감독 하에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 위원회는 시험과 결과에 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h. 시험은 이론 및 실기 시험으로 구성된다. 후보자는 견종에 상관없이 최소 2마리의 개를 심사해야 한다. 후보자는 개의 생김새와 움직임에 관한 장단점을 기술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개의 건강과 복지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결과 보고서는 시험관들이 검토한다.

시험은 특별 위원회가 주재하는데, 각 FCI 회원국이 임명하고 회원국의 세부 규정을 따른다. 따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후보자는 심사 후에 베스트 오브 브리드 수상견, 평가, 상력 등이 기입된 심사 보고서 (critique)를 써야 한다.

후보자는 시험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1) 견종 스탠다드와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
- 2) 일반 특징, 결점, 이를 평가하는 방법을 안다.
- 3) 심사 보고서 쓰는 방법을 안다.
- 4) 견종의 역사를 안다.
- 5) 견종의 성격, 용도, 건강 및 문제점을 안다.
- 6) 자국 및 다른 나라의 견종 개체수를 안다.
- 7) 비슷하면서 연관된 견종들의 차이점을 안다.

- i. 후보자가 속해 있는 FCI 회원국이 심사위원으로 승인하고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된 후, 자신의 법적 소재지에서 승인받은 해당 견종을 최소 2년 이상 심사한 이후에야 심사위원은 본국 외 카십(CACIB)이 수여되는 해외의 FCI 도그쇼에서의 심사가 가능하다.
- j. 자신의 법적 소재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심사위원 혹은 심사위원 후보자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새 견종에 관한 승인을 받는다. 단,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k. 후보자의 거주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해야 하고, FCI 사무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견종, 그룹, 전 견종에 대한 후보자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에는 그 국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다른 FCI 국가로 영구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한 지 3년 후에야 새 국가로 심사위원 자격이 이전된다. 이주 전의 국가가 더 빠른 자격 이전에 데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 l. 그룹 심사위원 이상일 때, FCI에서 새 견종이 공인되고 그 견종이 자신이 심사 가능한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견종 심사가 가능하다.
- m. FCI 회원국은 FCI 심사위원 명단에 위에 언급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자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명단 및 모든 심사위원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매년 FCI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카십(CACIB) 수여 가능 견종, 심사 가능 그룹, 베스트 인 쇼(Best in Show)에서 심사 자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명단 작성 시 FCI 견종 스탠다드 목록을 따른다.

### 3. 도그쇼 심사위원 정의

FCI 견종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견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FCI 회원국의 도그쇼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a) FCI 견종 심사위원
- b) FCI 그룹 심사위원
- c)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
- d) FCI 전견종 국내 심사위원

FCI 회원국은 각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의 심사 자격 정보를 FCI에 보고해야 한다.

#### **4. 추가 견종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하나 이상의 견종 심사 자격을 가진 견종 심사위원이 추가 견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청한 해당 견종 스탠다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견종에 대한 실기 시험도 필수이다.

실기 시험에서 특정 견종을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해당 견종 스탠다드에 관한 상세한 필기 시험을 치러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는 오직 새 견종을 추가하려는 기존 심사위원에게만 해당된다.

#### **5. 그룹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그룹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FCI 공식 그룹 중 하나 이상의 그룹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그룹 심사위원은 먼저 시작하는 5개 그룹에 한해 각 그룹마다 최소 1년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FCI 그룹 심사위원은 해당 그룹의 모든 견종에게 카십(CACIB) 수여가 가능하다. 또한 승인 후 카십 쇼에서 심사 가능한 그룹의 베스트 인 그룹(BIG)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자격이 없는 그룹으로 견종이 이전되더라도 심사위원은 해당 견종의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위원 후보자가 하나 이상의 그룹에 관해 교육받기 전에 FCI 회원국은 후보자의 심사 방식을 평가해야 한다. 견종 심사위원이 그룹 심사위원이나 전견종 심사위원 프로그램 승급을 원하면 FCI 회원국이 이를 결정한다.

FCI 핵심(Key) 그룹은 그룹 1, 2, 3, 9 그룹이다.

- a. 최초 그룹 교육 이수를 위한 심사위원 필수 자격 조건은 최소 4년간, 해당 그룹에서 3 견종 이상의 심사 경력이다. 각 견종을 5번 이상 심사한 경력 또한 필수이다. 대안으로, 그룹 교육 신청 전 최초 견종이 승인된 날부터 3년을 기다려야 한다.
- b. 최초 그룹에 관한 교육은 두 번째 그룹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 원칙은 이후 그룹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c. 먼저 시작하는 5개 그룹 중 핵심 그룹(1, 2, 3, 9)이 포함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그룹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
- d. 5개의 그룹이 승인된 이후에는 3개 이상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e. 최초 그룹의 교육 기간은 최소 2년이다. 그 이후의 교육은 1년이 가능하다.
- f. 시험은 한 견종 또는 한 그룹에 관한 실기와 해당 그룹에 관한 이론으로 이루어진다. 한 그룹 안에서 몇 견종에 대한 심사 자격이 있는 후보자가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을 경우에 한해 시험을 치루지 않고 다른 견종에 대한 승인이 가능하다.
- g. 5개 그룹이 승인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에 서면으로 추가 그룹 및 전견종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 h. 그룹에 관한 교육 중이더라도 심사위원 후보자는 이미 승인받은 견종에 관한 심사를 계속해야 한다.
- i.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이 최초 그룹 자격 획득 시 FCI에 보고해야 한다.

## 6.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FCI 공식 승인 그룹의 모든 견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만이 전 세계의 FCI 카십쇼에서 FCI 전건종을 심사할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견종 등록수를 고려하면서 해당 FCI 회원국이 FCI 전건종 국제심사위원 임명을 관할한다.

하지만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은 최초 그룹 승인 후 10년이 지난 자만이 자격 조건이 된다.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은 전 그룹의 여러 견종들에 관한 교육 및 승인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FCI 회원국은 유념해야 한다. 이 견종들은 최소한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견종이어야 한다.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 승인 및 임명과 관련된 필수 정보는 **최종 승인을 위해** FCI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 a.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FCI 5개 그룹 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b. 5개 그룹 중 적어도 하나는 핵심 그룹이어야 한다.
- c. FCI 회원국이 위에 언급된 규정과 과정을 준수한 그룹 심사위원을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 후보로 지명한다.
- d. FCI 전건종 국제 심사위원은 모든 FCI 10그룹 교육을 마친 것으로 여긴다.
- e. 첫 FCI 그룹 승인 날과 FCI 전건종 승인 날 사이의 최소 기간은 10년이다.
- f. FCI 요청대로 FCI 회원국은 교육 및 심사경력 세부사항이 포함된 새 FCI 전건종 심사위원 명단을 FCI에 보내야 한다.

## 7.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이 되는 방법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이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으로부터 자신의 국가에서 모든 건종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이 심사위원은 자신의 법적 소재지 카십쇼에서만 FCI 공식 승인 그룹의 모든 건종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 5개 FCI 그룹 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자국에서 전건종 심사승인이 가능하다. 이는 도그쇼 출진 건종이 보통 100 건종을 넘지 않는 FCI 회원국에만 해당된다. FCI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은 자국에서 FCI 그룹 및 건종 심사위원으로 승인된 건종에 한해 해외 심사가 가능하다. 전건종 국내 심사위원 승인 및 임명 정보는 FCI에 보내야 한다.

## 8.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인정되는 일반 조건

앞의 조항을 준수하고 FCI 회원국의 도그쇼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된 심사위원만이 인터내셔널 쇼에서 카십 수여가 가능하다. FCI 약정 파트너 심사위원의 경우는, 심사 가능 건종이 FCI와 약정 파트너 간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의 승인은 받았으나 5년 이상 심사 경험이 없는 심사위원은 심사 재개 전 새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심사 권한 재부여 전에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이 전에 승인받은 건종들을 심사할 역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심사위원이 FCI 회원국 또는 약정 파트너가 아닌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징계 중에 있지 않고, 초청국이 이를 알고 있고, FCI가 이를 동의한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심사 승인 건종을 심사할 수 있다. FCI 사무국이 심사 명단을 관리하고 심사를 승인한다. FCI가 이 심사위원들을 관할한다. 단, 추가 건종 및 그룹 승인을 위한 FCI 교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심사위원이 FCI 회원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징계 중인 경우 외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국

가에서도 자신의 심사 승인 견종을 심사할 수 있다.

-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 후보자는 자신의 새 법적 소재지에서 최소 12개월을 거주한 후에야 새 FCI 회원국의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법적 소재지가 변경되면 심사위원은 최대 3년 안에 새 FCI 회원국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새로 이주한 FCI 회원국 책임 아래 있다.
-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 후보자가 새로 등록하려는 FCI 회원국은 결정 전에 이전 FCI 회원국에 이의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의사항이 없어야만 새 FCI 회원국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될 수 있다.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전 FCI 회원국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존중의 차원에서 해당 심사위원은 새 FCI 심사위원 명단에 등록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FCI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결정이 나면 새 FCI 회원국에 심사위원 등록이 불가능하다. 해당 문서는 FCI에 보내야 한다.

## 9. 도그쇼 심사위원의 일반 의무

도그쇼 심사위원은 FCI 회원국 주최 도그쇼 심사 시에 자국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FCI 견종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 개의 기능적 건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도 스탠다드를 해석하지 않는다.

심사 시 심사위원은 이 FCI 심사위원 규정과 FCI 도그쇼 규정 및 다른 FCI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도그쇼 전에 항상 견종 스탠다드와 다른 중요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심사 시 항상 철저하고 신중해야 한다.

- FCI 스탠다드에 따라서 각 견증을 심사한다.
- 순수혈통견 복지에 관한 FCI 심사위원 의무 규약을 준수한다.
- 다른 동료 심사위원과 출진자를 존중한다.

## 10. 여행, 보험 협정

### a. 여행협정

심사위원과 도그쇼 운영진은 "FCI 도그쇼 및 심사위원 규정 부록"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게 부록에 수록된 혜택이 제공된다.

금전과 관련된 계약은 사전에 심사위원과 도그쇼 운영진 사이에 계약서 또는 서면 협의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측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b. 보험

해외 심사 시 심사위원은 보험(항공 취소, 사고 대비 등)에 가입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 해외 심사가 잦은 심사위원은 연간 보험에 가입한다.
- 해외 심사가 잦지 않은 심사위원은 쇼 기간만 보장하는 단기 보험에 가입한다.

## 11. 처신

### 1) 일반

FCI 회원국의 모든 심사위원은 국제 애견계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따라

서 심사위원은 신뢰할 수 있게 행동해야 하며, 심사할 때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비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리하여, 심사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 심사시간에 절대 늦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심사 업무를 완전히 종료하기 전까지 도그쇼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배정을 간청해서는 안 된다.
- 심사 전 또는 도중에 도그쇼 카탈로그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
- 도그쇼 링 안에서 예의바르게 행동하며 모든 개를 차별 없이 심사한다. 복장은 단정하고 적절해야 하며, 항상 올바르고 품위 있어야 한다.
- 도그쇼 링 안에서 흡연은 불가능하다.
- 도그쇼 링 안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다.
- 심사 도중 링 안에서 휴대폰 사용은 불가능하다.
- 심사위원으로 심사하는 도그쇼에 견을 출진시키거나 핸들링할 수 없다.
-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하는 견종이 아닌 다른 견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배우자, 직계 가족, 동거인의 출진 및 핸들링이 가능하다.
- 심사위원으로 심사하지 않는 카십쇼에서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 동거인이 브리딩하거나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견만을 핸들링할 수 있다.
- 심사가 예정된 도그쇼 당일부턴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심사위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 동거인이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집에서 머무르거나, 판매한 견을 심사할 수 없다.
- 심사가 예정된 도그쇼의 출진자와 함께 도그쇼 장소까지 동행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가 예정된 도그쇼의 출진자와 교체하거나 숙박해서는 안 된다. 심사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만 가능하다.

## 2) 심사 수락

- a. FCI 심사위원은 오직 FCI의 회원국 또는 산하 클럽이 개최하는 도그쇼에서 심사할 수 있다. FCI의 관할 외 국가(회원국 및 약정 파트너 이외의 국가)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제외

하고는 FCI가 인정하지 않은 행사에서 심사할 수 없다. 하지만 FCI 관할 외 국가에서 심사 시에도 자신의 법적 소재지 FCI 회원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FCI의 회원국 또는 산하 클럽이 개최하는 도그쇼에 초청될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자신의 법적 소재지 FCI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3항 "심사위원 승인"에 예외 조항이 있다.

- b.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 심사 초청을 받았을 때 해당 도그쇼 운영진이 FCI 관할 내에 있는지, FCI 승인 단체에 의해 개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질의를 거쳐야 한다.
- c. 도그쇼가 클럽에 의해 개최되는 경우, 그 클럽이 FCI 회원국 또는 약정 파트너 공인 클럽인지 확인해야 한다.
- d. 심사위원의 법적 소재지 외 국가에서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FCI 4개 공식 언어(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 적어도 한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도그쇼 운영진 요청 시 심사위원은 본인의 통역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e.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속한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견종 심사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베스트 인 그룹과 베스트 인 쇼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f. FCI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FCI 승인 도그쇼에서 심사 시 FCI 견종 스탠다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g. FCI 비회원국 및 FCI 준회원국 심사위원은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 시 자신의 국가에서 승인된 견종만 심사할 수 있다.
- h. FCI 비회원국의 심사위원은 FCI 도그쇼에 초청을 받았을 때 FCI에서 발행한 규격화된 설

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초청국은 지정 기일 내에 초청 심사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심사위원은 승인 서명 후 초청국에 보내야 한다.

- i. 심사와 관련된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심사위원이 이중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 심사위원이 속한 FCI 회원국은 이를 엄격히 처벌한다.

### 3) 심사위원 승인

FCI 견종 심사위원이 FCI 도그쇼에서 심사하려면 자신이 속한 회원국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만이 심사가 가능하다. 심사 시 심사위원은 현재 유효한 FCI 견종 스탠다드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FCI 그룹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 승인 없이도 승인 그룹의 모든 견종 및 베스트 인 그룹(BIG) 심사가 가능하다. 자국 및 초청국가가 서로 승인하고 FCI 그룹 심사위원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베스트 인 쇼(BIS) 심사가 가능하다.

FCI 전견종 국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회원국 승인 없이도 베스트 인 그룹 및 베스트 인 쇼를 포함한 모든 견종, 모든 도그쇼 심사가 가능하다.

도그쇼 운영진이 지정 기일 내에 FCI 전견종 국제심사위원에게 견종 스탠다드 제공이 가능하다면 단지 국내에서만 승인된 견종이라도 심사가 가능하다. 이는 FCI 그룹 심사위원에게도 자신의 승인 그룹 안의 견종에 한해 똑같이 적용된다.

FCI 인터내셔널 도그쇼 초청 심사위원의 최소 2/3는 FCI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FCI 심사위원(견종 - 그룹 - 전견종)이어야 한다.

## 12. 처벌

- 1) FCI 심사위원 규정, FCI 도그쇼 규정 및 국내 규정을 어떤 식으로도 위반한 심사위원은 자신이 속한 FCI 회원국의 관할 아래 놓이는데, FCI 회원국은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해당 심사위원을 처벌해야 한다. FCI 회원국은 심사위원의 위반 또는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집행 규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 2) 해당 심사위원에 구두 또는 서면 상으로 통지하는 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심사위원 처벌과 관련되었던 사람이 항소 관련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3) FCI 회원국은 다음의 처벌 사항을 고려한다.
  - a) 처벌 없이 사건 종결
  - b) 심사 금지에 관한 언급 또는 언급 없이 경고
  - c) 일정기간 심사 금지
  - d) 심사위원 자격 취소
  - e) 해외 심사 거부 또는 승인 철회
- 4) 법적 유효 후, FCI 회원국은 이 결정 사항을 FCI에 알려야 한다.

## 13. 시행

특히 규정에서 최종 결정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FCI 집행위원회는 그 해당 부분의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는 FCI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국제 행사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의 부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 규정이 유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은 FCI 총 위원회의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FCI 회원국과 약정 파트너에 배포되어야 한다.

**영문판이 원본이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굵은 글씨는 수정된 것으로 2014년 11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2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 **FCI 도그쇼와 도그쇼 심사위원 규정 부록**

### **도그쇼 심사위원 여행 경비에 관한 추가 규정**

1. 일반 여행 경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심사위원이 도착하자마자 보상되거나 도그쇼 운영진과 사전에 맺은 협정에 따른다. 실제 주행 거리(FCI 총 위원회 결정사항, 최소 0.35유로/km), 주차비, 기차 요금, 버스 요금, 택시 요금, 항공 요금(취소 및 변경 보증금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의 이코노미 클래스의 비행기 티켓), 여행 도중 식사비용 등 심사위원이 지불한 여행 경비.
2. 월드 도그쇼, 섹션 도그쇼, FCI 유럽 섹션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앞에 명시된 여행 경비 외에 심사일마다 50유로, 여행일마다 35 유로의 “일당(Daily allowance)”을 지급해야 한다.
3. FCI 유럽 섹션 외의 섹션에서 개최된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앞에 명시된 여행 경비 외에 심사일 및 여행일마다 35 유로의 “일당(Daily allowance)”을 지급해야

한다.

도그쇼 운영진은 모든 인터내셔널 도그쇼에서 국내 규정에 따라 자국 심사위원에게도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문판이 원본이다.

이 규정은 2013년 10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굵은 글씨는 수정된 것으로 2014년 4월 칸쿤에서 개최된 FCI 총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4월부로 효력이 발생한다.